## [일반원칙]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[일반원칙]	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(제2형 당뇨병)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
	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,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
당뇨병용제	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.
(고시	- 아 래 -
제2023-58호)	가. 경구용 당뇨병치료제
	1) 단독요법
	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,
	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
	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,
	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.
	- 다 음 -
	가) 헤모글로빈A1C(HbA1C) ≥6.5%
	나) 공복혈장혈당 ≥ 126mg/dl
	다)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≥ 200mg/dl
	라)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≥ 200mg/dl
	2) 병용요법
	가) 2제요법
	(1) 단독요법으로 2-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
	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
	인정함.
	- 다 음 -
	(プ) HbA1C ≥7.0%
	(나) 공복혈당 ≥130mg/dl
	(다) 식후혈당 ≥180mg/dl

## 구 분 ## (2) HbA1C ≥7.5%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. | O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,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. | (3) 인정 가능 2제 요법 | SGLT-2

구 분		Metformin	Sulfonyl urea	Megliti nide	a-glucosid ase inhibitor	Thiazoli- dinedione	DPP-IV inhibitor	SGLT-2 inhibitor			
								dapagli flozin	ipragli flozin	empaglif lozin	ertugli flozin
Metformin			인정	인정	인정	인정	인정	인정	인정	인정	인정
Sulfonylurea		인정		$\times$	인정	인정	인정	인정	인정	인정	인정
Meglitinide		인정	$\times$		인정	인정	$\times$	X	X		$\times$
a-glucosidase inhibitor		인정	인정	인정			$\times$		X		
Thiazoli- dinedione		인정	인정	인정	X		인정				
DPP-IV inhibitor		인정	인정	$\times$		인정		$\times$			$\times$
	dapagliflozin	인정	인정	$\times$			$\times$				
SGLT-2 inhibitor	ipragliflozin	인정	인정	$\times$			$\times$				
	empagliflozin	인정	인정								
	ertugliflozin	인정	인정				X				

(4)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 한 경우도 인정함.

## 나) 3제요법

○ 2제 요법을 2-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%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	인정함. 단,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
	되어서는 아니되나, 다음의 3제요법은 인정함.
	- 다 🚊 -
	(1) metformin + SGLT-2 inhibitor + DPP-IV inhibitor
	(2) metformin + SGLT-2 inhibitor(ertugliflozin 제외) +
	Thiazolidinedione
	나. Insulin 요법
	1) 단독요법
	가) 초기 HbA1C가 9% 이상인 경우,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
	당뇨병(LADA),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, 고혈
	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, 신장・간손상, 심근경색증, 뇌졸중,
	급성질환 발병 시,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
	주사제 투여를 인정함.
	나)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% 이상인
	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.
	2) 경구제와 병용요법
	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
	7%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
	을 인정함.
	가)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.
	단,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
	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.
	다. GLP-1 수용체 효능제
	1) 경구제와 병용요법
	가) 투여대상
	Metformin+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	을 할 수 없는 환자 중
	(1) 체질량지수(BMI: Body mass index)≥25kg/m² 또는
	(2)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
	나) 투여방법
	(1) 3종 병용요법(Metformin +Sulfonylurea+GLP-1 수용체 효능제)을 인정
	(2)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
	병용요법(Metformin+GLP-1 수용체 효능제)을 인정
	2) Insulin과 병용요법(단일제)
	가) 투여대상
	기저 Insulin(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) 투여에도
	HbA1C가 7% 이상인 경우
	나) 투여방법
	기저 Insulin+GLP-1 수용체 효능제(+Metformin)을 인정
	3) Insulin과 병용요법(복합제)
	가) 투여대상
	기저 Insulin(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) 투여에도
	HbA1C가 7% 이상인 경우
	(다만, Insulin degludec +Liraglutide의 경우에는 기저
	Insulin과 Metformin 병용 시만 인정)
	나) 투여방법
	(1) Insulin glargine + Lixisenatide: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시 인정
	(2) Insulin degludec + Liraglutide: Metformin과 병용 시 인정
	라. 각 단계에서 명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변경을
	요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함.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	마.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함.
	바. 급여 인정용량
	각 약제별 용법·용량 범위 내에서 급여하며, 다음의 인정용량
	을 초과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.
	- 다 음 -
	1) Repaglinide 경구제(복합제 포함): 1일 최대 6mg
	2) Pioglitazone 경구제(복합제 포함): 1일 최대 30mg
	3) Metformin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Metformin 단일제 추가 투여
	시(복합제 용량 포함)
	가) 일반형: 1일 최대 2,550mg
	나) 서방형: 1일 최대 2,000mg
	다) 일반형과 서방형 병용: 1일 최대 2,550mg까지 인정하나, 서
	방형을 2,000mg까지 투여 시에는 추가투여 할 수 없음
	4) Glimepiride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Glimepiride 단일제 추가투여
	시: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하여 1일 최대 8mg
	※ 대상약제
	[경구제 중 단일제]
	· Biguanide계: Metformin HCl
	· Sulfonylurea계: Glibenclamide, Gliclazide, Glimepiride, Glipizide
	· Meglitinide계: Mitiglinide calcium hydrate, Nateglinide, Repaglinide
	· a-glucosidase inhibitor계: Acarbose, Miglitol, Voglibose
	· Thiazolidinedione계: Lobeglitazone sulfate, Pioglitazone HCl
	· DPP-IV inhibitor계: Alogliptin, Anagliptin, Evogliptin, Gemigliptin,
	Linagliptin, Saxagliptin, Sitagliptin phosphate, Teneligliptin HBr,
	Teneligliptin HCl, Teneligliptin ditosylate,, Vildagliptin, Vildagliptin

구 분	세부인정기준 및 방법
	HCl, Vildagliptin nitrate
	· SGLT-2 inhibitor계: Dapagliflozin, Empagliflozin, Ertugliflozin,
	Ipragliflozin
	[경구제 중 복합제]
	· Gibendamide+Metformin HO, Glidazide+Metformin HO, Glimpinide+ Metformin
	HO
	· Mitiglinide calcium hydrate+Metformin HCl, Nateglinide+Metformin
	HCl, Repaglinide+Metformin HCl
	· Voglibose+Metformin HCl
	· Lobeglitazone sulfate+Metformin HCl, Pioglitazone HCl+Metformin
	HCl
	· Pioglitazone HCl+Glimepiride, Rosiglitazone maleate+Glimepiride
	· Alogliptin+Metformin HCl, Anagliptin+Metformin HCl, Evogliptin+
	Metformin HCl, Gemigliptin+Metformin HCl, Linagliptin+Metformin
	HCl, Saxagliptin+Metformin HCl, Sitagliptin phosphate+Metformin
	HCl, Teneligliptin HBr+Metformin HCl, Teneligliptin
	HCl+Metformin HCl, Teneligliptin ditosylate +Metformin HCl,
	Vildagliptin+Metformin HCl, Vildagliptin HCl+Metformin HCl,
	Vildagliptin nitrate+Metformin HCl
	· Alogliptin+Pioglitazone HCl
	· Dapagliflozin+Metformin HCl, Empagliflozin + Metformin HCl
	[スス] マバ]
	[주사제] · Insulin 주사제
	· GLP-1 수용체 효능제(단일제): Dulaglutide, Exenatide
	· Insulin + GLP-1 수용체효능제 (복합제): Insulin glargine +
	Lixisenatide, Insulin degludec + Liraglutide
	Limbellande, insulin degradet ' Linagiande